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3에 ‘농산업’의 정의가 도입('25. 12. 30.)됨에 따라, 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산업으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,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·투자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이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규정하고 있는 「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」를 근거로 법률의 포괄적 정의를 구체화하고, ‘농산업’ 정의 도입으로 개정된 법 제35조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‘농산업’ 관련 내용을 추가하며, 아울러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업·농촌에 관한 문화창달 및 가치 확산·홍보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9조의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인에 ‘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’을 추가함으로써 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‘농산업’의 범위 관련 조문 신설(안 제6조의2 신설)

- 1)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규정하고 있는 「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」를 근거로 법률의 포괄적 정의를 구체화

나. ‘농산업’ 정의 도입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개정(안 제17조제1항 개정)

- 1) ‘농산업’ 정의 도입으로 개정된 법 제35조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‘농산업’ 관련 내용 추가

다.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등의 사무위탁 기관 확대(안 제19조제4호 라목 신설)

- 1)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업·농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·홍보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9조의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인에 ‘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’을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농산업의 범위) 법 제3조제8호의3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산물 가공·유통업

가. 동물을 도축하는 업(業)

나. 양잠을 통해 생산한 섬유 등 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(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은 제외한다)을 가공·유통하는 업(業)
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·농촌 관련 서비스업

가. 농산업 관련 금융·보험, 과학기술 연구·개발, 교육, 소프트웨어 개발·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(業)

나. 민박·관광농원·체험장·치유농업·동식물 테마파크·승마장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해 숙박, 여가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(業)

다. 동물 운송, 가축분뇨 처리, 동물 의료, 반려동물 보호 및 농업인력 알선·공급 등 농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(業)

3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산업 투입재 산업

가. 농업기계, 스마트 농업 관련 기자재, 비료, 농약, 사료, 동물용 의약품, 식품 포장 용기 및 가공 기계 등 농산업 투입재 관련 제조업

나. 농산업 투입재 관련 유통 및 서비스업

제17조의 제목 “(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·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)”을 “(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·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·연구”를 “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개발·연구”로, “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”를 “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”로 한다.

제19조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농산업의 범위) 법 제3조제8호의3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.</u> <u>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산물 가공·유통업</u> <u>가. 동물을 도축하는 업(業)</u> <u>나. 양잠을 통해 생산한 섬유 등 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(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은 제외한다)을 가공·유통하는 업(業)</u> <u>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·농촌 관련 서비스업</u> <u>가. 농산업 관련 금융·보험, 과학기술 연구·개발, 교육, 소프트웨어 개발·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(業)</u> <u>나. 민박·관광농원·체험장·치유농업·동식물 테마파크·승마장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해 숙박, 여가 및</u>

	<u>치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</u> <u>하는 업(業)</u> <u>다. 동물 운송, 가축분뇨 처</u> <u>리, 동물 의료, 반려동물</u> <u>보호 및 농업인력 알선·</u> <u>공급 등 농산업 서비스를</u> <u>제공하는 업(業)</u>
	<u>3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산</u> <u>업 투입재 산업</u> <u>가. 농업기계, 스마트 농업 관</u> <u>련 기자재, 비료, 농약, 사</u> <u>료, 동물용 의약품, 식품</u> <u>포장 용기 및 가공 기계 등</u> <u>농산업 투입재 관련 제조</u> <u>업</u> <u>나. 농산업 투입재 관련 유통</u> <u>및 서비스업</u>
<u>제17조(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·</u> <u>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</u> <u>획 수립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</u> <u>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업 및</u> <u>식품 관련 기술개발·연구 및</u> <u>이들에 대한 평가관리체제의 확</u> <u>립 등을 위한 중·장기 목표를</u> <u>설정하고, 민간 및 공공연구개</u> <u>발의 활성화와 농업 및 식품 관</u>	<u>제17조(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</u> <u>의 농산업 관련 기술·연구 등</u> <u>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)</u> <u>① ----- 농업 및</u> <u>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</u> <u>련 기술개발·연구 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 농업 및 식품산업</u>

<u>런 기술개발 및 연구 결과의 실</u> 용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세워야 한다. ② ~ ⑤ (생 략) 제19조(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 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) 법 제4 6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. 1. ~ 3. (생 략) 4. 다음 각 목의 법인 가. ~ 다. (생 략) <u><신 설></u>	<u>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개</u> <u>발 및 연구</u> ----- ----- -----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9조(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 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) ----- ----- ----- 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 <u>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</u> <u>원</u>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전략기획단	
연 락 처	(044) 201 - 1562 (044) 201 - 1563